

1. 제정이유

사회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훈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0000. 0 0. 0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기관 지정 절차를 마련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접수 방법과 납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안 제2조)

모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신청서와 필요한 첨부 서류를 정함

나. 모집방법(제3조)

모집기관이 모집 및 접수를 할 때 필요한 첨부 서류를 정함

다. 기부자 관리(제4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모집비용 충당(제5조)

모집기관이 모집된 기부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모집비용의 비율과 지출 내역 증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기부금품의 납입(제6조)

모집기관의 모집 결과 보고 및 소속 공무원이 모집기관의 납입사항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훈기금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훈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보훈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모집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제3조(모집 방법)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기록하는 장부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 기부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단,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제4조(기부자 예우)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모집비용의 충당)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모집기관이 모집된 기부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모집비용의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모집기관의 모집비용 지출내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기부금품의 납입 등)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모집 결과 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행정사항의 위임) 이 시행규칙으로 정한 내용 이외에 기부금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모집비용의 총당 비율

모 집 금 액	적 용 비 율	비 고
1. 1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2% 이하	
2.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8% 이하	
3. 100억원 초과 25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6% 이하	
4. 25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4% 이하	
5.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2% 이하	
6. 1,000억원 초과	모집금액의 1% 이하	

모집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기관	기관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기관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보훈기금법」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모집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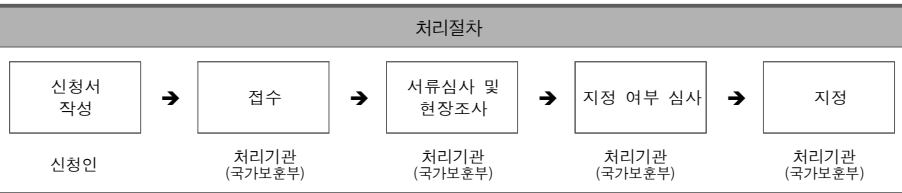
신청인
년 월 일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유의사항

「보훈기금법」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은 보훈복지사업 또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합니다.



기부금 모집 상황 및 내역서

[illegible]

※ 비 고

1. 이 장부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설치한 경우 통장 등과 합본할 수 있습니다.
2. 기부금품 모집 인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집종사자별로 색인표를 붙여도 무방합니다.
3. 금액란에는 기부자로부터 모집한 금액이나 예금이자 등을 적어 넣어야 합니다.
4. 필요한 경우 적당한 여백을 이용하여 일제 또는 월계와 잔액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기부물품 모집 상황 및 내역서

[illegible]

※ 비고

1. 기부금품 모집 인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인원별로 색인표를 붙여도 무방합니다.
2. 필요한 경우 적당한 여백을 이용하여 물품의 종류별 일계 또는 월계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 기부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기부자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기부자 (법인·단체)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기부명세	기부금액 원		
	기부물품	품명	
		수량	점
기부금품 접수기관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서명 또는 인)

기부금품 접수 기관의 장 귀하

기부금품 지정기부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기부자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기부자 (법인·단체)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기부명세	기부금액 원		
	기부물품	품명	
		수량	점
기부금품 접수기관			
사용목적과 사용용도 (구체적으로 기재)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서명 또는 인)

기부금품 접수 기관의 장 귀하

모집비용 지출 내역서

[illegible]

※ 비교

필요한 경우 적당한 여백을 이용하여 일계 또는 월계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부금품 모집 상황 · 내역 및 기부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

모집자					
모집목적					
모집기간					
모집금액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기부금	모금방법	모 금 액(원)		비 고
		합 계			※ 모집허가금액 대비 %
	기부물품	종 점			
	모집금의 금융기관 납입 및 기부금품 전달 내역	기부금 납입 내역	금융기관별	금 액(원)	계 좌 번 호
		합 계		-	-
	기부물품	종 점(에 전달)			

「보훈기금법」 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상황·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온
수

모집자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모집 공고서 사본 1부.
------	------------------

유의사항

「보훈기금법」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접수한 기부금품은 지체없이 보훈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모집 결과를 모집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앞 면)

제 호 기부금품 모집 검사 공무원증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보훈기금법」 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보 훈 부 장 관 직인	사 진 (2 cm × 3 cm)
---	------------------------

74mm×52mm[백상지(150g/㎡)]

(뒷 면)

주 의 사 항
1. 이 검사공무원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합니다. 2. 기부금품의 모집검사를 목적으로 모집자의 사무소·모집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때에는 이 검사공무원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훈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보훈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모집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신 설>	제3조(모집 방법)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기록하는 장부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 기부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단,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신 설>	제4조(기부자 예우)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다.

<u><신 설></u>	<u>②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u>
<u><신 설></u>	<u>제5조(모집비용의 충당)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모집기관이 모집된 기부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모집비용의 비율은 별표 1과 같다.</u>
<u><신 설></u>	<u>②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모집기관의 모집비용 지출내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u>
<u><신 설></u>	<u>제6조(기부금품의 납입 등)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모집 결과 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u>
<u><신 설></u>	<u>②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u>
<u><신 설></u>	<u>제7조(행정사항의 위임) 이 시행규칙으로 정한 내용 이외에 기부금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u>